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소송 전문 AI 법률 플랫폼

분석일: 2026년 9월 18일 | 분석 문서: 1건 | IBLY AI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

성명: 정민수(가명)

생년월일: 1985년 ○월 ○일생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등록기준지: (첨부 파일에서 확인되지 않음)

연락처: (첨부 파일에서 확인되지 않음)

피고

성명: 한수진(가명)

생년월일: 1987년 ○월 ○일생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친정 주소)

등록기준지: (첨부 파일에서 확인되지 않음)

연락처: (첨부 파일에서 확인되지 않음)

사건본인

성명: 정하늘(가명)

생년월일: 2016년 ○월 ○일생

주소: 원고와 같음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6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 금 800,000원씩을 지급하라.
- 피고는 사건본인과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혼인 경위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혼인 중 2016년 ○월 ○일 딸 정하늘(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원으로 재직 중이며 월 평균 3,8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 피고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월 평균 2,5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경위 및 재판상 이혼 사유

가. 피고의 도박 중독 및 재정 파탄 초래 (민법 제840조 제6호)

피고는 2022년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어 원고 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7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당액의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고가 이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도박 중단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때마다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25년에도 다시 도박을 계속하였습니다.

피고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부부의 재정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반복되면서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나. 피고의 악의의 유기 (민법 제840조 제2호)

피고는 2025년 9월경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빈번해졌으며, 2026년 1월경 일방적으로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후 현재까지 동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별거 이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방기한 채 거의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부의 동거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다. 피고의 부당한 대우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 (민법 제840조 제6호)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 혼인 관계의 회복 불가능성

위와 같은 피고의 도박 중독,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는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혼인 관계를 회복할 의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위자료 청구

피고의 도박 중독, 악의의 유기, 부당한 언행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피고가 초래한 채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양 당사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청구

가. 분할 대상 재산

원고와 피고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항목	명의	금액	비고
전세보증금	원고	300,000,000원	원고 부모 지원금 100,000,000원 포함
예금	원고	20,000,000원	
대출 채무	피고	-70,000,000원	피고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순재산 합계		250,000,000원	

나. 기여도 및 분할 비율

전세보증금 중 100,000,000원은 원고의 부모가 지원한 금액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 명의의 대출 7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 몰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혼인 공동생활의 유지·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할 대상 재산은 전세보증금 200,000,000원과 예금 20,000,000원을 합한 220,000,000원입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가계를 유지하였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피고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박 중독으로 가정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별거 이후 양육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70% 이상으로 평가되며, 피고의 기여도는 30% 이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50,000,000원(분할 대상 재산 220,000,000원 × 피고 기여도 30% - 피고 명의 채무 부담분 조정)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가. 양육 현황

사건본인은 2026년 1월 피고가 별거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의 모친이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사건본인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피고는 별거 이후 사건본인을 거의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양육 의사나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 자녀의 복리

사건본인은 현재 만 9세로서 정서적 안정과 지속적인 양육 환경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고는 사건본인과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교육과 정서 발달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도박 중독과 별거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 태도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양육비

가. 양육비 산정 기준

원고의 월 소득은 3,800,000원, 피고의 월 소득은 2,500,000원으로서 총 6,300,000원입니다.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 환경,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월 양육비는 최소 1,600,000원이 필요합니다.

나. 부담 비율

양 당사자의 소득 비율(원고 60%, 피고 40%)을 고려하면, 피고는 월 양육비의 40%인 64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원고가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면서 부담하는 비용과 피고의 혼인 파탄 책임을 고려하여 피고는 월 800,000원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6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 금 800,000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7. 면접교섭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로서 피고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 발달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다만 피고의 생활 태도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 장소, 시간 등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생활 리듬을 존중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피고가 안정적인 생활 태도를 회복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의 도박 중독,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 사실 입증)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출생 사실 입증)
3. **갑 제3호증**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 입증)
4. **갑 제4호증** 피고 명의 대출 내역서 (피고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 발생 사실 입증)
5. **갑 제5호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피고의 무단 카드 사용 사실 입증)
6. **갑 제6호증** 원고 진단서 (우울증) (원고의 정신적 고통 입증)
7. **갑 제7호증** 문자 메시지 사본 (피고의 부당한 언행 및 별거 경위 입증)
8. **갑 제8호증** 원고 소득 증명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고의 경제적 능력 입증)
9. **갑 제9호증** 피고 소득 추정 자료 (피고의 경제적 능력 입증)
10. **갑 제10호증** 전세계약서 사본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입증)
11. **갑 제11호증** 예금 잔액 증명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입증)
12. **갑 제12호증** 원고 부모의 금융거래 내역 (전세보증금 중 특유재산 입증)
13. **갑 제13호증** 양육 관련 지출 내역 (양육비 산정 자료)

첨부서류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 2. 소장 부분 1통
- 3. 혼인관계증명서 1통
-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 5.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6.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1통
- 7. 송달료 납부서

2026년 ○월 ○일

위 원고 정민수 (인)

○○가정법원 귀중

증거 보강 권고 사항

- 피고의 도박 사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 피고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 또는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 악의의 유기:** 피고가 별거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CCTV, 이사 내역, 증인 진술 등), 피고가 동거 요구를 거부한 문자·통화 내역
- 부당한 대우:** 피고의 모욕적 언사가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증인(가족, 지인) 진술서
- 원고의 정신적 고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처방전, 상담 기록 등 지속적 치료 사실 입증 자료
- 재산분할:** 원고 부모의 전세보증금 지원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차용증 등
- 양육 현황:** 사건본인의 학교 생활기록부, 원고 모친의 양육 지원 확인서, 사진·영상 등 양육 실태 자료
- 피고의 양육 방기:** 피고가 사건본인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통화·문자 내역, 일기, 증인 진술

판사 관점 판결 예측

판사 관점 검토 보고서

본 보고서는 정민수(원고)가 한수진(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사건에 대한 법률 분석 보고서를 가정법원 판사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혼인 파탄 사유의 법적 타당성, 증거의 충분성, 각 청구항목별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원고 주장의 설득력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주장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의 도박 중독을 제6호 사유로 구성한 점은 적절합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한 재정 파탄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2022년경부터 도박에 빠졌고 2025년에도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도박 시기, 빈도, 금액 등이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7천만 원의 대출이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각 대출 시점과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악의의 유기 주장은 법리 구성에 일부 취약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별거를 넘어 부양의무 불이행, 동거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기 의사 표시, 유기 의사의 명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6년 1월 일방적으로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인 2025년 9월경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빈번했다는 점에서 별거 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별거한 것이 원고의 도박 문제 지적과 갈등에 따른 것이라면, 피고 측에서 정당한 별거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보다는 제6호 사유로 통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대우 주장은 원고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점에서 일응의 개연성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모욕적 언사의 내용, 시기, 빈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부부 간 다툼과 인격권 침해 수준의 언행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 3천만 원은 혼인 기간 약 12년, 미성년 자녀 1명, 피고의 유책 정도를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통상 이 정도 사안에서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원이 감액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논리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는 전세보증금 중 1억 원을 부모 지원금으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면서도, 분할 대상을 2억 2천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산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 채무 7천만 원을 공제한 다음 최종 분할금 산정 과정이 불명확합니다. 기여도 70:30 주장도 구체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피고가 월 250만 원의 소득 활동을 하였고 자녀 양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60:40 또는 55:45 정도로 보는 것이 판례 경향에 부합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비교적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고가 현재 주 양육자이고 안정적 소득과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가 별거 후 양육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원고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9세로 모의 양육이 필요한 연령대이므로, 피고의 양육 의사와 능력에 대한 반박이 있을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월 80만 원 청구는 소득 비율 대비 다소 높습니다. 원고 소득 380만 원, 피고 소득 250만 원으로 총 630만 원일 때, 자녀 1명의 표준양육비(2024년 기준 약 80만~100만 원)를 고려하면 피고 부담분은 40% 수준인 32만~40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원고가 직접 양육하므로 간접양육비를 고려하더라도 80만 원은 과다하며, 법원은 40만~50만 원 수준으로 감액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교섭 청구는 합리적입니다. 월 2회, 주말 8시간은 표준적인 면접교섭 범위에 해당하며, 자녀 복리에 부합합니다.

2. 증거의 충분성

제출 예정 증거 목록을 검토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13개 증거가 나열되어 있으나 실질적 증명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박 사실 입증과 관련하여 갑 제4호증(대출 내역서)과 갑 제5호증(신용카드 사용내역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대출금이 실제로 도박에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하려면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 계좌이체 명세, 피고의 도박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증거 목록에는 이러한 직접 증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 제7호증(문자 메시지 사본)이 이를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증거 설명을 구체화하고 실제 도박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악의의 유기 입증도 미흡합니다. 별거 시점을 2026년 1월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집을 나간 날짜, 이사 과정, 원고의 동거 요구와 피고의 거부 사실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내용증명,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갑 제7호증이 이를 포함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 입증은 더욱 취약합니다. 갑 제6호증(우울증 진단서)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나, 그 원인이 피고의 언행 때문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피고의 구체적인 모욕적 발언 내용, 시기, 상황이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목격한 제3자(가족, 친구, 이웃 등)의 진술서나 증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울증 진단이 피고의 언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에서 원고가 피고의 언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관련 증거는 비교적 충실합니다. 갑 제10호증(전세계약서), 갑 제11호증(예금 잔액 증명서), 갑 제12호증(원고 부모의 금융거래 내역)은 재산 현황과 특유재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 제12호증이 실제로 원고 부모가 1억 원을 증여 또는 대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 차용증, 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모의 진술서 등이 보강되면 유리합니다.

양육 현황 입증은 보강이 필요합니다. 갑 제13호증(양육 관련 지출 내역)은 양육비 산정에 참고가 되나, 원고가 주 양육자임을 입증하려면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원고 모친의 양육 지원 확인서, 일상적인 양육 사진이나 영상, 자녀와의 일기나 대화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별거 후 자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통화 및 문자 내역, 원고 측 일기,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갑 제9호증(피고 소득 추정 자료)은 그 성격이 불명확합니다. 피고가 소득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사실조치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거의 양은 충분해 보이나, 핵심 쟁점인 도박 사실,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거 보강 권고 사항에 열거된 자료들을 실제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입니다.

3. 상대방 예상 반박

피고 측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변과 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박 사실 부인 또는 축소입니다. 피고는 대출금 7천만 원이 모두 도박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생활비, 사업 자금, 기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 등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도박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다룰 수 있습니다.

둘째, 별거의 정당성 주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언, 무관심, 경제적 압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동거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도박 문제를 지나치게 추궁하거나 모욕적으로 대했다면, 피고의 별거가 정당방위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악의의 유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쌍방 유책 주장입니다. 피고는 원고도 부부관계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정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거나, 피고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쌍방 유책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분할 관련 반박입니다. 피고는 전세보증금 중 1억 원이 원고 부모의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거나, 또는 피고에게도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 대출 7천만 원 중 일부는 가게 운영에 사용되었으므로 부부 공동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다룰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에서도 피고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50:50 또는 최소 40:60을 주장할 것입니다.

다섯째, 친권 및 양육권 다툼입니다. 피고가 별거 후 자녀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면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9세로 모의 양육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모인 피고가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녀가 원고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의 생활 기반이 불안정하다면 이 항변의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섯째, 양육비 과다 주장입니다. 피고는 월 80만 원이 소득 대비 과도하며, 표준양육비 기준에 비추어 40만~50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항변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곱째, 면접교섭 확대 요구입니다. 피고는 월 2회가 아니라 매주 또는 방학 중 장기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의 양육 의사와 환경이 개선된다면 면접교섭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판결 예측

이혼 청구 인용 가능성: 85% / 기각 가능성: 15%

위자료 청구 인용 가능성: 70% (다만 감액 인용 가능성 높음)

재산분할 청구 인용 가능성: 90% (다만 금액 조정 가능성 높음)

친권자·양육자 지정 인용 가능성: 80%

양육비 청구 인용 가능성: 95% (다만 감액 인용 가능성 높음)

면접교섭 청구 인용 가능성: 95%

이혼 청구: 피고의 도박 중독과 이로 인한 재정 파탄, 별거 상태 지속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박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하며, 피고가 도박 사실을 부인하거나 원고의 유책을 주장할 경우 심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제2호)는 별거의 정당성 문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제6호 사유만으로도 이혼 인용은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12년,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별거 상태와 혼인 관계 회복 불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이혼은 인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용 가능성 85%.

위자료 청구: 피고의 도박과 별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청구 금액 3천만 원은 과다합니다. 유사 사안에서 법원은 통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유책 정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1천5백만 원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가 쌍방 유책을 주장하여 일부 받아들여지면 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자체의 인용 가능성은 70%이나, 청구 금액 전부 인용 가능성은 20% 이하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은 거의 확실히 인정되나,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기여도 산정에서 원고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이 원고 부모의 증여로 특유재산임이 명확히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고 명의 대출 7천만 원 중 실제 도박에 사용된 부분만 피고 개인 채무로 보고, 생활비 등에 사용된 부분은 부부 공동 채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여도는 원고 주장 70:30보다는 60:40 또는 55:45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인용 가능성 90%, 다만 청구 금액(5천만 원) 전부 인용 가능성은 30% 이하입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현재 원고가 주 양육자이고 안정적 소득과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가 별거 후 양육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원고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9세 여아로 모의 양육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피고가 양육 의사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원고의 양육 환경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가사조사관 조사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 상태로는 원고 지정 가능성 80%.

양육비 청구: 양육비 청구 자체는 거의 확실히 인정되나, 월 80만 원은 과다합니다. 원고 소득 380만 원, 피고 소득 250만 원, 총 630만 원 기준으로 자녀 1명의 표준양육비는 월 80만~100만 원 정도이며, 피고의 부담 비율은 약 40%입니다. 따라서 피고 부담 양육비는 32만~40만 원이 적정합니다. 원고가 직접 양육하므로 간접양육비를 고려하더라도 50만 원을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40만~50만 원 수준으로 감액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청구 인용 가능성 95%, 다만 청구 금액(80만 원) 전부 인용 가능성은 10% 이하입니다.

면접교섭 청구: 월 2회, 주말 8시간은 표준적인 면접교섭 범위로서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피고가 확대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생활 태도를 이유로 제한을 요구할 경우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적응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청구 인용 가능성 95%.

종합 판단: 이혼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되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가사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인용되되 월 40만~5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원고 주장대로 또는 일부 조정되어 인용될 것입니다.

5. 판사 코멘트

본 소장은 형식적으로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증명력 있는 증거 확보가 시급합니다. 특히 도박 사실 입증이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대출 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 계좌이체 명세, 피고의 자백이 담긴 문자나 녹취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없이는 피고가 도박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혼 사유 입증에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 주장은 법리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의 정당성 문제로 인해 제2호 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6호 사유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별거 사실은 혼인 관계 파탄의 징표로 활용하되, 악의의 유기로 독립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제6호 사유의 한 요소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한 대우 주장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라고만 기재할

부당한 대우 주장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발언 내용, 시기, 장소, 상황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당신 같은 무능력자와는 살 수 없다', '이혼하자'는 등의 발언을 반복하였고, 2025년 8월경에는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비하하였다"는 식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목격자 진술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산정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소장에는 분할 대상을 2억 2천만 원으로 계산하면서도 최종 분할금을 5천만 원으로 청구하는 과정이 불명확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에서 특유재산 1억 원을 제외하면 2억 원, 여기에 예금 2천만 원을 더하면 2억 2천만 원입니다. 피고 명의 채무 7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전액 피고 개인 채무로 본다면 순재산은 1억 5천만 원이 되고, 기여도 70:30 적용 시 피고 몫은 4천5백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됩니다. 논리적 모순이 있으므로, 재산분할 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전세보증금 2억 원(특유재산 1억 원 제외 후)과 예금 2천만 원으로 하여 총 2억 2천만 원으로 하되, 피고 명의 채무 7천만 원 중 실제 도박에 사용된 금액만 피고 개인 채무로 보고 나머지는 부부 공동 채무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 사용액이 5천만 원으로 입증되면, 이를 피고 개인 채무로 보아 피고가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공동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면 순재산은 2억 원이 되고, 기여도 60:40 적용 시 피고 몫은 8천만 원, 원고 몫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현재 재산이 모두 원고 명의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피고가 개인 채무 5천만 원을 부담하므로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 금액은 현실화해야 합니다. 월 80만 원은 표준양육비 기준과 소득 비율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법원이 감액할 것이 명백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적정 금액인 월 40만~50만 원을 청구하거나, 80만 원을 청구하되 법원의 감액 인용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면 자녀의 실제 양육 비용 지출 내역(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상세히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 양육비를 산정한 후 소득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입니다. 자녀가 만 9세이므로 의사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며,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청취할 것입니다. 원고는 자녀가 현재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 모친의 양육 지원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의 양육 능력 부족이나 생활 불안정성을 입증하려면, 피고의 현재 거주 환경, 소득 안정성, 양육 계획의 구체성 등을 다투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 소장은 법률 요건을 형식적으로는 충족하고 있으나, 실질적 증명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청구 항목의 논리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재산분할 산정 논리를 재정비하며, 양육비 청구 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박 사실 입증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 증거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안 제시 시 합리적인 선에서 양보할 부분과 고수할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과 친권자 지정은 원칙을 고수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양육비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면접교섭도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여러 쟁점이 복합되어 있고,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재산분할 산정과 도박 사실 입증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I 기반 분석

본 판결 예측은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